

공사시방서

< 차량기지 자재창고 방법창 설치 >

2012.05



부산김해경전철운영(주)

제1장 총 칙

1-1 일반사항

1.1 적용범위

본 시방서는 부산김해경전철운영(주)가 발주한 “차량기지 자재창고 방법창 설치”에 적용하며,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따른다.

1.2 작업일반

- (1) 본 시방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.
- (2)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가설재 및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내판, 위험표지판, 기타 안전시설에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.
- (3) 모든 자재는 KS 자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, 자재 반입시 사전에 시공감리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시공기간 동안 타공중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,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.
- (5) 철거된 자재를 감독이 지정한 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.
- (6) 철거재 및 제작 작업시 잔재 운반시 기지내에 잔재를 흘리지 않도록 유의하며, 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완전히 정리하여야 한다.
- (7) 제작 설치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.
- (8) 기타 제작 설치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은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9) 계약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(전, 후)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시공 완료 후 2부 제출. (사진첩 1부, 별도 양식에 의거 사진 1부, 기타 필요에 의해 촬영한 사진은 CD-DISC에 저장 보관하여 1부 제출토록 한다.)

1.3 설계변경

- (1) 계산 및 수량 착오 등에 의하여 공사내역 금액이 초과되었을 때는 초과된 금액을 즉시 환입 조치한다.
- (2) 공사 시공중 "갑"의 승인 없는 임의의 공법변경 및 시공 등이 발생시 도급액에서 감액 조치한다.
단, "갑"의 공법개선 기술심의를 통하여 인정된 "을"이 제안한 공법에 대하여

- 여 절감된 공사비는 감액대상에서 제외, 이를 인정한다. 또한 공사여건에 따라 공종별 시공물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이는 정산물량에서 제외한다.
- (3) 계약사항 변경은 "공사 완료후" 도면 및 현장여건에 의한 시공 정미량에 의하여 정산한다.

1.4 현장 대리인

- (1) "을"은 공사 착공전에 해당공사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있으며, 공사 전반적인 사항의 책임자를 "갑"의 확인을 득한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, 절대로 재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, 이를 이행치 않을시 당사 임의대로 공사를 해지할 수 있다.
- (2) 현장대리인은 공사진행 사항 일체에 대하여 "을"의 회사를 대표하여야 하며, 현장대리인계를 "갑"에게 제출한다.
- (3) 공사수행에 있어서 능력과 성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"갑"은 이의 교체를 명하여 "을"은 3일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.

1.5 "을"의 부담 항목

- (1) 현장설명서, 내역서,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아도 공사수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"갑"이 판단하는 사항
- (2) "을"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.
- (3) "갑"이 지급한 자재의 분실, 오염, 훼손에 대한 관리, "갑"으로부터 각종 자재를 인수한 후에 "을"의 과실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, 오염, 훼손에 대한 책임은 "을"에게 있으며, 이 경우 "을"의 부담으로 변상, 구입, 시공하여야 한다.

1.6 기타

- (1) "갑"은 "갑"의 사정이나 감독 업무상 불가피할 경우 계약일을 조정할 수 있다.
- (2) "을"은 입찰시 "갑"의 요구가 있을시 특정내역의 일위대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(3) 공사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"갑"의 지시에 따라 야간작업, 조기작업 및 작업시간대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당초 단가에

포함된 것으로 한다.

- (4)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.
- (5) 현장 내 가설숙소는 인정치 않으며, 가설 사무실과 창고는 "갑"이 지정하는 위치에 "을"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공정진행상 "갑"의 이전지시가 있을 시에는 "을"의 부담으로 즉시 이전하여야 한다.

제2장 시 공 내 용

2-1 공사장소 및 범위

- (1) 공사장소 : 검수고 2개소, 자재창고#1, 자재창고#2
- (2) 공사범위
 - 알루미늄 일반방법창 설치 (19EA)

2-2 재료 및 설치공사와 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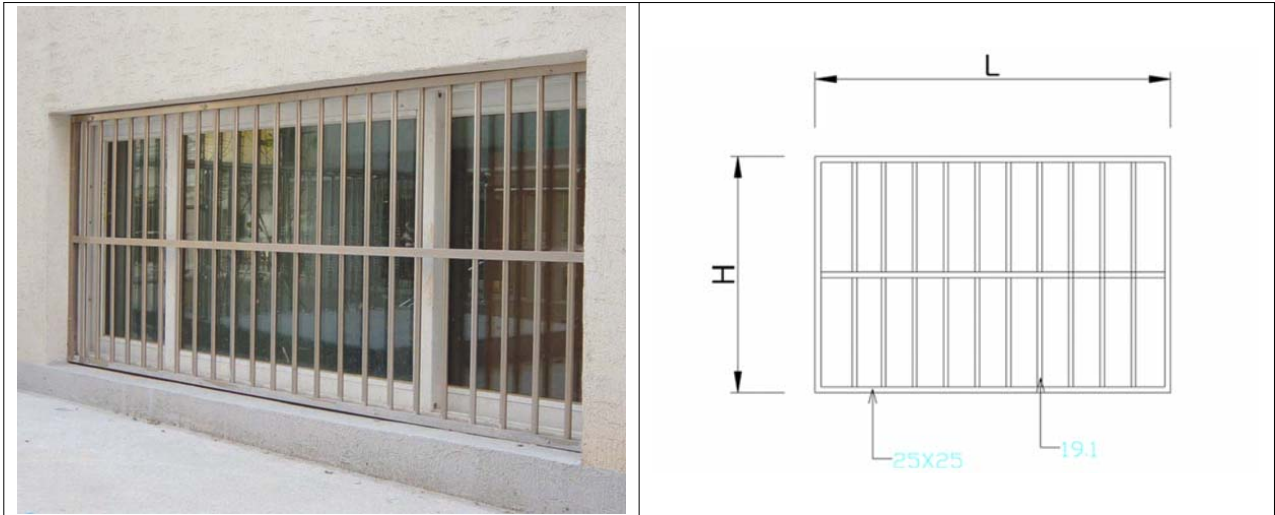
2.2.1 재료

- (1) KS 규격품으로 봉 지름은 19mm, 두께 1.2T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며 방법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.
- (2) 수직봉 간격은 15c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3) 모든 부재는 녹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.
- (3) 작업에 대한 모든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.

2.2.2 설치공사

- (1)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(허용오차포함)은 일반공사시방서 내용을 따른다.
- (2) 방법성능을 충분히 발휘되도록 60cm 이내 간격으로 고정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. (단, 현장 설치시 감독자와 협의 후 조정가능)
- (3) 방법창 설치시 주의하여야 하며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 후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설치시 외관도장이 벗겨져서는 안된다.

2.2.4 참고도면



2.2.4 검사

- (1) 설치완료후 자체검사 실시후 담당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.
- (2) 현장 및 공사부위의 청소를 반드시 완료한 후 감독자 검사를 받는다.

제3장 안전에 관한 사항

- (1) 작업장에는 “작업중” 이라는 안전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.
- (2) 당일 작업 종료 시 현장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잔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수거하여 일괄 반출토록 한다.
- (3) 현장 내 모든 출입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고 필요시 안전장구를 휴대 착용하여야 하며, "갑"측의 판단에 의해 불안정한 요소가 발견될 시는 "갑"측은 즉시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"갑" 또는 "을"의 손실을 전액 "을"이 부담한다.
- (4) "을"을 당 현장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중 불미스러운 언행이나 폭행, 절도, 불법단체 결성 난동, 작업방해 및 속칭 "사보타지"를 하는 자, 제반수칙에 불복하는 자 등은 입법조치나 추방하여야 한다.
- (5) "갑"의 직원지시에 불성실하거나,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당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으며, 즉시 추방해야한다. "을"이 이를 불이행할 시는 최고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원인이 되며, 이로 인한 손실은 전적으로 "을"의 책임이다.
- (6)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하며, 이에 따른 민,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진다.

제4장 품질 보증 기간 (하자 기간, 하자보수보증금율)

- (1) 품질 보증기간(하자기간)은 작업완료 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품질 보증 내용(하자내용)은 시공 부실로 인한 하자 및 육안으로 판단되는 부적절한 모든 사항을 하자내용으로 본다.
- (2)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%로 한다.